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로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12월 26일 한옥밀집지역이 지정 공고됨에 따라 한옥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로 변경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

1)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안 제2조)

2)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3조)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만료(2014.12.31.)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6조)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옥에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제38조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3)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제4조, 제12조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12조
- 5)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공고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예산팀, 한옥문화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5. 3. 19 ~ 4. 8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별첨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별첨
- 6) 성별영향분석 평가 :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토지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u>100분의 100</u> 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 ----- ----- ----- -----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u>100분의 75</u> 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u>100분의 50</u> -.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50</u> 을 경감한다.
제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	<삭 제>

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신 설>

제10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토지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

제10조 ~ 제16조 (생략)

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11조 ~ 제17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새로운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소액이고 감면조항 삭제 등 기존 재산세 감면율의 축소로 실질적 비용은 줄어듦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등록 한옥 감면조례 신설에 의한 2015년 구세 감면추계액
- 감면추계액 : 180천원(등록된 한옥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반영 후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세무1과장 최상균

[첨부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 [전문개정 2010.12.30.]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제4조 (등록) ① 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1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건축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한옥밀집지역 또는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8조에서 정하는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북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2025호

한옥밀집지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밀집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1. 한옥밀집지역 지정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한옥밀집지역	성북동1가105-11 (행나무울 일대)	31,20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13.11.28)
	성북동 02-17 (선잠단지 일대)	5,908㎡	
	계	37,113㎡	

※ 면적 및 한옥종수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케드구역) 및 성북구 기초조사내 용에 근거

2.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한옥조성추진반 한옥조성팀(02-2133-5576),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한옥문화팀(02-2241-2802)에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 고 구 역 도 면

○ 위 치 : 성북동 1가 및 성북동 일대(행나무울, 선잠단지 일대)

○ 면 적 : 총 37,113㎡(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한옥밀집지역	성북동1가105-11 (행나무울 일대)	31,20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13.11.28)
	성북동 02-17 (선잠단지 일대)	5,908㎡	
	계	37,113㎡	